

심사보고서

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

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69
----------	-----

2024. 4. 30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청 원 인 : 유가족 대표 류건덕, 부상자 대표 한을환

나. 접수일자 : 2024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4월 23일

-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)

2. 청원 요지

- 청원인들은 2017.12.21.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2020. 3. 충청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가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줄 것을 청원함.

3. 청원 이유

- 대법원까지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소방공무원 과실 중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사망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이 확정되었고, 청원인들은 보상은 커녕 막대한 소송비용만 더 부담하게 됨.
- 청원인들과 충청북도 간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할지라도, 청원인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자라는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임.
- 이에 청원인들은 충청북도의회가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주실 것을 청원함.

4. 청원소개의견 요지 (소개의원 : 김꽃임 의원)

- 제천스포츠 화재 참사로 청원인들의 다수가 정신적,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, 청원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.
- 충청북도의회가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청원을 소개하게 됨.

5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무면제를 규정

< 지방자치법 >

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① ~ ④ <생략>.

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.

- 제천화재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은 1억7천7백만원으로 소송비용이 면제되더라도 2024.2.15. 유족 지원 협약에 따른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예상되어 실질적 매듭에는 한계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」에서는 각각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한다고 규정함.
- 청원처리결과의 보고방식과 이행 강제성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.

6. 검토의견

- 「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」을 검토한 결과, 청원인들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에 대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제5항에 따라 채무 면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결의를 요청하는 내용임.
- 「민사소송법」 제98조(소송비용부담의 원칙)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론적 원칙임.

- 특정 소송 건에 대한 소송비용 면제는 패소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, 유가족의 사정으로 1.77억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수용 여부도 고려해야 함.
- 본 청원을 통한 소송비용 면제는 향후 유사한 소송비용 면제 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결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.
- 본 청원에 대해 도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송비용 면제에 대한 의결이 아니므로 소송비용 면제(채권에 관한 채무면제)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야 함.
- 최근 법제처의 법령회신 사례에 비추어보면, 청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「지방자치법」상 ‘청원의 수리 및 처리’에 대한 의결로서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며,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.
- 따라서, ‘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’는 의결로 청원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의 이행 강제성 등 법적 구속력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할 것임.
- 다만, 국회 결의안에 명시된 것과 같이 ‘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,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’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‘소방당국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’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.
 -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의 사회적 파급력

- 사고 발생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충청북도와 유가족 측의 피로도
- 공공기관의 신뢰도 및 도민화합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

○ 또한, 지난 해 12월에 통과된 국회 결의안 내용 중 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대책수립과 이행,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적 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충청북도에서 논의 중인 유가족 지원 문제와는 별개로 소송비용 면제(채무면제)에 대한 문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익적 차원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8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9. 심 사 결 과 : “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”

※ 의견서 :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의결

10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2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가. 청원 요지서 : 붙임 1 참조

나. 의견서 : 붙임 2 참조

【붙임1】

청 원 요 지 서			
접수일자	2024. 4. 11.	접수번호	2024-2
청 원 인	주 소	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6길 26-20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15길 47, 104동 901호	
	성 명	류 건 덕, 한 을 환	
소개의원	산업경제위원회 김 꽃 임 의원		
건 명	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청원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2017. 12. 21.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제천스포츠 화재로 청원인들은 정신적,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○ 2020. 3. 충청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청원인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음○ 국회에서도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으며, 충청북도지사도 제천화재참사 피해구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음○ 충청북도의회가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줄 것을 청원함			
소관위원회	건설환경소방위원회		

【붙임2】

<h1>의 건 서</h1>	
청원건명	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
처리결과	채택(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)
처리기관	충청북도지사
채택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, 화재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, 공공기관의 신뢰도 및 도민화합의 대승적 결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,○ 「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제11조2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.